

『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기본소득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의 명칭, 목적, 기능, 기본소득의 정의(안 제1 ~ 4조)
- 협의회의 구성, 임원, 임원선출 및 임무(안 제5 ~ 8조)
-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, 회의, 협의사항의 조정(안 제9 ~ 13조)
- 협의회의 실무협의회, 시·도별협의회, 자문위원(안 제14 ~ 16조)
- 협의회의 사무국, 사무국의 업무(안 제17 ~ 18조)
- 협의회의 경비, 수당, 회계보고 및 결산, 규약개정(안 제19 ~ 2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·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관련정책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약이며,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광역(경기도) 1개, 기초(경기도 30, 전국 48) 78개로 총 7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